

「2025년 환경교육주간행사 개최」

업무협약 및 위·수탁 협약서

- 위탁자 : (갑) 원주시장 원 강 수
- 수탁자 : (을)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총장 박 덕 영
- (병) 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 충 일

“2025년 환경교육주간 행사 개최” 와 관련하여 (갑)과 (을) 및 (병)은 위·수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.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“2025년 환경교육주간행사 개최” 를 (갑)이 수탁자 (을),(병)에 위탁함에 있어 그 범위,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 및 협약변경) ① 협약의 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, 고시, 조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약서에 의하되,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(갑)과 (을) 및 (병)이 상호 협의하여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.

② 협약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3조(업무의 범위) (갑)이 (을) 및 (병)에 위탁하는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1. <환경교육주간행사> 기획 및 운영
2. <환경교육주간행사> 언론, 방송, 광고 등 홍보
3. <환경교육주간행사> 기간 문화행사 개최
4. <환경교육주간행사> 참여기관·단체 모집
5. <환경교육주간행사> 회계관리

제4조(사업기간) “2025년 환경교육주간행사 개최” 의 위·수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5. 8. 31.까지로 한다.

제5조(사업비 지급, 집행 및 정산) ① (갑)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(병)에 지급한다.

구 분	금 액	비 고
현 금	금80,000,000원	시비

② (병)은 사업비를 (갑)이 정한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,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③ (병)은 교부받은 사업비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관련 증빙서를 포

함한 정산서를 (갑)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(갑)에 반납하여야 한다.

④ (갑)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(병)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(수탁기관의 의무) ① (을),(병)은 제3조에 따른 사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(을),(병)은 관계 법규와 이 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 협약에 의한 (갑)의 명령이나 처분 등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제7조(협약 해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(갑)은 위·수탁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1. (을),(병)이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
2. (을),(병)이 제3조에 명시된 사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수행하지 않은 경우
3. (을),(병)이 관련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
4. 그 밖에 (을),(병)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(갑)의 지휘·감독을 따르지 않은 경우 등

제8조(보안) 본 협약에 따른 업무추진 중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협약의 해석 등)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(갑),(을),(병)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조정 결정한다.

제10조(효력의 발생) ① 본 협약서는 상호가 모두 날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② 본 협약서는 3부 작성하여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5년 5월 9일

(갑)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

원주시장

원 강 수 (인)

(을)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원로 150

국립강릉원주대학교 총장

박 덕 영 (인)

(병)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남원로 150

국립강릉원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 충 일 (인)

